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055 발의연월일: 2023. 5. 17.

발 의 자:김병욱·정태호·장철민

정성호 • 민병덕 • 조오섭

윤준병 • 우원식 • 한준호

김두관 · 김영진 · 김수흥

김민철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재난의 정의를 화재와 붕괴, 폭발, 교통사고, 화생방사고, 환경오염 사고,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 확산, 미세먼지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에너지 수급문제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요금 및 난방비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
이에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함으로써 에너지 수급 관련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나목 중 "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"를 "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, 「에너지법」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혂 행 개 아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1. (생략) 가. (생략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 발 · 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 • 화 생방사고 · 환경오염사고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 ----- 「미세 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 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, 「에너지법」에 따른 에너 로 인한 피해 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 다. (생략) 다. (현행과 같음) 2. ~ 12. (현행과 같음) 2. ~ 12. (생 략)